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10. 28 선고 2017가합106129 판결 [공사대금일부청구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소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재용, 김연화, 최유나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주식회사 C

3. 주식회사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

담당변호사 김진용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세종

담당변호사 조웅, 김나정

변론 종결2020. 9. 9.

판결 선고2020. 10. 2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1. 28.부터 이 사건 소장

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

가. 원고는 피고들과 ① 2014. 4.경 경기도 가평군 E 외 3필지 소재 'F'의 건축 및 토목공사(이하 '이 사건 가평 공사'라 한다), ② 2015. 6.경 경기도 양평군 G 소재 'H'의 건축 및 토목공사(이하 '이 사건 양평 공사'라 한다), ③ 2016. 2. 15. 제주시 I 소재 'J'의 건축 및 토목공사(이하 '이 사건 J 공사'라 한다), ④ 2015. 5.경 원고와 충북 제천시 K 소재 'L'의 토목공사(이하 '이 사건 L 공사'라 한다) 및 ⑤ 2016. 2. 15. 서귀포시 M에 있는 'N' 공사(이하 '이 사건 N 공사'라 한다)에 관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4. 4. 15. 이 사건 가평 공사에 착공하였는데, 현장지반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설계도서 미비로 토목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피고들의 설계변경으로 평당 공사비가 증가하였고, 2014. 10.경 이 사건 양평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설계도서 미비, 고품질 자재로 변경, 경사지 공사로 인한 토목설계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, 2015. 9.경 이 사건 J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공사 설계심의를 거치면서 외부마감재 등이 고가의 자재로 설계되어 공사비가 증가하였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비를 후속 공사에서 보전해주겠다고 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5. 9.경 이 사건 L 공사에 착공하였고, 2016. 2.경 이 사건 N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피고들은 2016. 5.경 피고들의 자금난을 이유로 이 사건 L 및 N 공사의 중지를 지시하였다가 2016. 11. 28.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.

라.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있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, 피고들이 선행 공사에서 증가된 공사비를 후속 공사에서 보전해주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한 공사비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마.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정률, 기성금액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,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억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1	가평	100%	2,074,000,000	1,842,732,727	231,000,000
2	양평	70%	5,019,000,000	4,090,130,390	928,000,000
3	J	75%	3,387,750,000	2,546,781,600	840,000,000
4	N	25%	1,752,500,000	1,464,000,000	288,000,000
5	L	15%	1,636,500,000	1,314,000,000	322,000,000
계			13,869,750,000	11,257,644,717	2,609,000,000

2. 판단

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·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,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·입증을 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26684,94다26691 판결 등 참조). 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기성고 상당 공사를 완성하였다거나, 피고들이 원고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을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미리

판사천지성

판사이영곤

1) 소장 기재에 의한다. 원고는 2018. 3. 21.자 준비서면에서는 소장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사의

기성금 합계가 316억 8,100만원(= 가평 공사 20억 740만 원 + 양평 공사 71억 7,000만 원+J공사 45억 1,700만 원 + N 공사 70억 1,000만원 + L 공사 109억 1,000만 원)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